

2015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제1장 2015년 항공교통서비스 현황

제3절

안전도 정보





### 제3절 안전도 정보

#### 1. 국적항공사의 항공기사고<sup>2)</sup> 및 준사고<sup>3)</sup> 발생 현황

- ❖ 2014년에는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준사고도 1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5년에는 최근 5개년에 비해 국적항공사의 항공기사고 및 준사고 발생이 잦아 항공교통이용자의 항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됨.

〈표 1-13〉 국적항공사 최근 5년간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사고	1	2	3	0	1	7
준사고	3	4	3	1	8	19
총 계	4	6	6	1	9	26

자료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 2015년 발생한 항공기사고는 총 1건이며, 아시아나항공 A320기가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 착륙 중 활주로 시단 부근 지상의 계기착륙시설에 부딪힌 후 활주로를 이탈한 것으로 현재 원인 조사 중임.
  - ▶ 해당 사고로 인하여 항공기 동체가 대파되었으며,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던 항공교통이용자 20명이 경상을 입음.
- ❖ 2015년 발생한 항공기준사고 건수는 총 8건으로 이 중 6건이 FSC에서 발생함.
  - ▶ 2015년 1월 아시아나항공 B747기는 운항 중 기장석 3번 창문에서 전기스파크 및 연기가 발생하여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공항에 긴급 착륙하였으며, 현재 원인 조사 중에 있음.

2) 항공법 제2조 제13호에 의하면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중상 또는 행방불명,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3) 항공법 제2조 제14호에 의하면 항공기 준사고란 항공기사고 외에 항공기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을 말함.

- ▶ 2015년 2월 대한항공 A330기가 미얀마 양곤 공항의 지상 이동 중 임시 주기장에 주기 중이던 다른 항공기와 충돌하였으며, 조사 결과 공항당국의 판단 오류가 준사고 원인으로 판명됨.
- ▶ 2015년 4월 대한항공 B737기가 고도 27,000피트로 운항 중, 객실 여압장치 이상으로 비상선언 후, 중국 군밍공항에 비상착륙하였으며, 준사고 발생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음.
- ▶ 2015년 5월 이스타항공 B737기가 국내 청주공항에서 관제사의 판단 오류로 인해 다른 항공기가 사용 중인 활주로에 착륙한 바 있음.
- ▶ 2015년 7월 대한항공 B737기는 괌 공항에서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였다가 재진입 후 정지하였으며, 현재 원인 조사 중임.
- ▶ 2015년 7월 아시아나항공 A330기는 국내 서해 상공 운항 중 우측엔진에 화재가 발생하여 인천공항으로 외항하였으며, 해당 원인 조사 중에 있음.
- ▶ 2015년 7월 대한항공 A330기는 운항 중 엔진이상이 발견되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공항으로 회항하였으며, 원인 조사를 진행 중에 있음.
- ▶ 2015년 12월 제주항공 B737기는 운항 중 여압장치 이상으로 산소마스크 드롭 후, 제주공항에 비상착륙 하였으며, 현재 발생 원인을 조사 중임.



〈표 1-14〉 2015년 국적항공사 준사고 내역

발생일자/장소	항공기	사고 개요
'15.1.14/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공항 북동방향 120마일 항로	아시아나 항공/ B747-400SF	비행 중 기장석 3번 창문에서 전기스파크 및 연기 발생으로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공항에 긴급 착륙
'15.2.13/미얀마 양곤공항	대한항공/ A330-200	지상 이동 중 임시 주기장에 주기중이던 다른 항공기와 충돌
'15.4.15/중국 군밍공항 인근 항로	대한항공/ B737-900	고도 27,000피트에서 객실여압 미공급으로 비상선언 후 착륙
'15.5.28/청주 공항	이스타 항공/ B737-800	다른 항공기가 사용 중인 활주로에 착륙
'15.7.5/괌 공항	대한항공/ B737-800	착륙 중 활주로 이탈하였다가 재진입 후 정지
'15.7.14/서해 상공 항로	아시아나 항공/ A330-300	비행 중 우측엔진 화재 발생으로 엔진정지 후 인천공항으로 회항
'15.7.23/사우디 리야드 공항 인근 항로	대한항공/ A330	비행 중 엔진이상으로 사우디 리야드공항으로 회항
'15.12.23/제주 공항	제주항공/ B737	비행 중 여압장치 이상으로 산소마스크 드롭하고 비상선언 후 착륙

자료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과

## 2. 국내 취항 외국적항공사의 안전도 정보

- ❖ 국내 취항 중인 외국적항공사의 안전도 정보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제공하여 보다 안전한 항공사를 선택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 안전도 정보 주요내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의 국가별 항공안전평가 결과,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IASA 항공사 안전등급 및 유럽연합(EU)의 블랙리스트임.
- ❖ 이와 함께, 외교부에 지정한 여행금지국가(경보단계)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라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도모하고자 함.

### 가. ICAO의 국가별 항공안전평가(USOAP)

- ❖ UN 산하의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는 항공안전평가(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 USOAP) 시행을 통해 ICAO 회원국의 조직, 법령, 종사자 자격 및 항공안전 감독체계 등에 대한 국제안전기준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있음.
  - ▶ USOAP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는 운항, 정비, 종사자 등 3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운항, 감항, 종사자 자격관리, 관제, 공항, 사고조사 등 안전관련 전 분야에 대한 종합평가 방식으로 확대 시행 중에 있음.
- ❖ USOAP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조치는 없으나, 각 국가에서 타국가의 항공안전 수준을 측정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 2016년 6월 6일 기준 ICAO 지정 안전우려국은 9개 국가이며, 2015년 7월 키르기스스탄이 새로운 ICAO 안전우려국으로 지정되었음.
  - ▶ 이 중 해당 국가의 항공사가 국내에 취항하는 국가는 태국으로, 타이항공, 비즈니스에어, 타이에어아시아엑스, 제트아시아 4개사임.

〈표 1-15〉 ICAO 지정 안전우려국(2016. 6. 기준)

구분	해당국가
안전우려국 (9개국)	앙골라, 지부티, 에리트리아, 아이티, 키르기스스탄, 레바논, 말라위, 네팔, 태국(타이항공, 비즈니스에어, 에어아시아 엑스, 에어아시아 제스트)

주 : () 우리나라 취항 중인 항공사  
 자료 : ICAO 홈페이지

### 나. 미국 FAA의 국가별 항공안전평가(IASA) 등급

- ❖ 국제항공안전평가(International Aviation Safety Assesment, IASA)란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이 자국을 운항하는 외국적항공사의 항공당국을 ICAO 국제표준에 따라 평가하기 위해 1992년에 마련한 항



공안전평가 프로그램임.

- ▶ IASA는 항공당국의 조직 및 감독 기능·기술 지침·기술직 공무원의 자격·항공사 등에 대한 증명발급 및 안전감독체계 등이 주요 평가기준임.
- ▶ 평가 결과에 따라 두 종류(1등급·2등급)로 구분하고, 2등급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 국적 항공사와의 공동운항(Code share) 금지, 운항증편 제한 등과 같은 운항제한 조치가 부과됨.
- ❖ 2015년에는 2등급이던 니카라과가 1등급으로 변경되었으며, 태국이 2등급으로 하락함.
- ▶ 2등급 국가의 항공사가 국내에 취항하는 국가는 태국과 인도네시아이며, 인도네시아의 취항 항공사는 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임.

〈표 1-16〉 FAA 항공안전평가 결과(2015. 12. 기준)

등급	해당국가
1등급 (81개국)	아르헨티나, 아루바,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벨기에, 버뮤다, 볼리비아,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카보베르데, 케이만제도,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과테말라, 홍콩,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쿠웨이트,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몰타, 멕시코, 모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동카리브 국가기구,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한국, 루마니아, 러시아,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세르비아, 싱가포르, 남아공, 스페인,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대만, 트리니다드 & 토바고, 터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2등급 (8개국)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큐라소, 가나, 인도네시아(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 생마르틴, 태국(타이항공, 비즈니스에어, 에어아시아 엑스, 에어아시아 제스트), 우루과이

주 : () 우리나라 취항 중인 항공사  
 자료 : FAA 홈페이지

#### 다. 유럽연합(EU) 블랙리스트

- ❖ 유럽연합(EU) 블랙리스트는 EU 소속 국가를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안전성이 결여되는 항공사는 EU 지역 운항

을 제한하는 제도로써 Annex A, Annex B의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음.

- \* Annex A에 해당하는 항공사의 소속 항공기들은 EU 지역 내 운항 금지
- \* Annex B에 해당하는 항공사는 일부 기종에 대해서만 EU 지역 내 운항 허가

〈표 1-17〉 유럽연합(EU) 블랙리스트 Annex A(2016. 6. 기준)

구분	블랙리스트 항공사
Annex A (21개국, 216개 항공사)	수리남(블루윙항공), 이라크(이라키항공), 아프가니스탄 국적사(4개사), 앙골라 국적사(13개사, TAAG 앙골라항공은 Annex B 해당), 베냉 국적사(8개사), 콩고 국적사(8개사), 콩고민주공화국 국적사(21개사), 지부티 국적사(1개사), 적도기니 국적사(4개사), 에리트리아 국적사(2개사), 가봉(6개사, Afrijet과 SN2AG는 Annex B 해당), 인도네시아 국적사(52개사, 가루다항공, 에어패스트, 익스프레스 트랜스포타시 안타베누아, 인도네시아에어아시아, 씨티링크, 라이온에어, 바틱항공 등 7개 항공사 제외), 카자흐스탄 국적사(19개사, 에어 아스타나 제외), 키르기스스탄 국적사(13개사), 라이베리아 국적사, 리비아 국적사(7개사), 모잠비크 국적사(17개사), 네팔 국적사(18개사), 상토메프린시페 국적사(2개사), 시에라리온 국적사(7개사), 수단 국적사(12개사)

자료 : EU 홈페이지

〈표 1-18〉 유럽연합(EU) 블랙리스트 Annex B(2016. 6. 기준)

구분	항공사	운항제한 기종	
Annex B (5개국, 6개 항공사)	북한	Air Koryo	TU-204를 제외한 모든 기종
	가봉	Afrijet Business Service	Falcon 50, Falcon 900을 제외한 모든 기종
		Nouvelle Air Affaires Gabon (SN2AG)	CL-601, HS-125-800을 제외한 모든 기종
	이란	Iran Air	F100, B747을 제외한 모든 기종
	코모로스	Air Service Comores	LET410 UVP를 제외한 모든 기종
	앙골라	TAAG Angloa Airlines	B737-700, B777-200, B777-300을 제외한 모든 기종

자료 : EU 홈페이지



라. 항공안전등급 현황(ICAO, FAA, EU)

- ❖ ICAO 항공안전평가, FAA의 항공안전평가, EU의 블랙리스트 결과는 <표 1-19>와 같음.
- ▶ ICAO 항공안전평가에 따른 안전우려국 중 국내 취항 하는 항공사가 포함된 국가는 태국이며, 타이항공, 비즈니스에어, 에어아시아 엑스, 에어아시아 제스트가 취항 중에 있음.
- ▶ FAA 항공안전평가 2등급 항공사 중 국내 취항 중인 항공사는 태국과 인도네시아이며, 인도네시아 취항 항공사는 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임.
- ▶ 국내 취항 중인 항공사 중 EU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 항공사는 없음.

〈표 1-19〉 항공안전등급 현황(2016. 6. 기준)

국 가	ICAO우려국 '16.6. 기준 (9개국)	FAA 2등급 '15.12 공시 (8개국)	EU블랙리스트 '15.6.25 공시 (24개국)	비 고 (EU 블랙리스트 상세내역)
가나		●		
가봉			◎/△	6개사(AfriJet 운영 Falcon 50, Falcon 900 제외, SN2AG 운영 CL-601, HS-125-800 제외)
네팔	○		◎	18개사
라이베리아			◎	
레바논	○			
리비아			◎	7개사
말라위	○			
모잠비크			◎	17개사
바베이도스		●		
방글라데시		●		
베냉			◎	8개사
북한			△	1개사(고려항공 운영 TU-204 제외)
상토메프린시페			◎	2개사
생 마르틴		●		
수단			◎	12개사
수리남			◎	1개사
시에라리온			◎	7개사
아이티	○			
아프가니스탄			◎	4개사
앙골라	○		◎/△	13개사(TAAG항공 운영)



국 가	ICAO우려국 '16.6. 기준 (9개국)	FAA 2등급 '15.12 공시 (8개국)	EU블랙리스트 '15.6.25 공시 (24개국)	비 고 (EU 블랙리스트 상세내역)
				B737-700, B777-200, B777-300 제외)
에리트레아	○	●	◎	2개사
우루과이		●		
이라크			◎	1개사
이란			△	1개사(이란항공 운영 F100, B747 제외)
적도기니			◎	4개사
지부티	○		◎	1개사
코모로스			△	1개사(에어서비스항공 운영 LET410 UVP 제외)
콩고			◎	8개사
콩고민주공화국			◎	21개사
큐라소		●		
키르기스스탄	○		◎	13개사
태국	○	●		
인도네시아		●	◎	52개사(가루다인도네시아, 에어패스트인도네시아, 엑스프레스, 인도네시아에어아시아 등 4개사 제외) *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국내 취항 중
카자흐스탄			◎	19개사(에어아스타나항공 제외) * 에어아스타나항공 국내 취항 중

주 : ◎ EU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항공사의 모든 기종에 대해 EU운항 제한  
 △ EU내 제한적 운항 허용(특정 항공사의 일부기종은 운항 허용)

### 3. 외교부 여행금지국가

- ❖ 외교부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여행금지국을 지정하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고 있으며, 2016년 6월 기준으로 7개 국가가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되어 있음.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음.

- ▶ 아프가니스탄 : 2007.8.7 ~ 2017.1.31.
  -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 2015.12.1 ~ 2017.1.31.
  - ▶ 리비아 : 2014.8.4 ~ 2017.1.31
  - ▶ 시리아 : 2011.8.20 ~ 2017.1.31
  - ▶ 예멘 : 2011.6.28 ~ 2017.1.31
  - ▶ 이라크 : 2007.8.7 ~ 2017.1.31
  - ▶ 소말리아 : 2007.8.7 ~ 2017.1.31.
- ❖ 여행자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여행안전정보 제공에 초점을 둔 ‘여행경보’와 달리 외교부는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여 단기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여행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 특별여행경보 발령 요건은 해당국가의 치안이 급속히 불안정해지거나,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발령하며, 특별여행경보 발령에 따라 여행경보의 발령 단계가 조정되지는 않음.
  - ▶ 특별여행경보의 기본 발령 기간은 1주일이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자동으로 연장됨.

〈표 1-20〉 특별여행경보 발령현황(2016. 6. 기준)

국가	특별여행경보 단계	비고
방글라데시	특별여행주의보	16. 7.29일~ 9월 중순까지
이스라엘	특별여행주의보	서안지구(West Bank)
	특별여행경보	가자지구
필리핀	특별여행경보	민다나오 지역(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여행금지지역 및 카가안데오로, 다바오시를 제외한 지역), 단 카가안 데오로시 및 다바오시의 해안가는 특별여행경보지역
레바논	특별여행경보	북부 트리폴리, 아르살, 헤르멜 지역, 베카 해당지역(브리텔 이북), 레바논산맥 이동 지역(바알 베크 포함)
이집트	특별여행경보	시나이반도 지역
기니	특별여행경보	전지역
남수단	특별여행경보	전지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특별여행경보	전지역
카메룬	특별여행경보	적색·특별여행경보 지정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주1 : 특별여행경보 1단계란 특별여행주의보라고도 하며,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적색경보(철수권고)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함. 해외체류자는 긴급응무가 아닌한 철수하여야 하며, 방문 예정자는 가급적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야 함.  
 주2 : 특별여행경보 2단계란 기존의 여행경보단계와는 관계없이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즉시대피'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함. 해당 지역 체류자는 즉시 대피하고, 방문 예정자의 방문이 금지됨.

자료 : 외교부 홈페이지